

第2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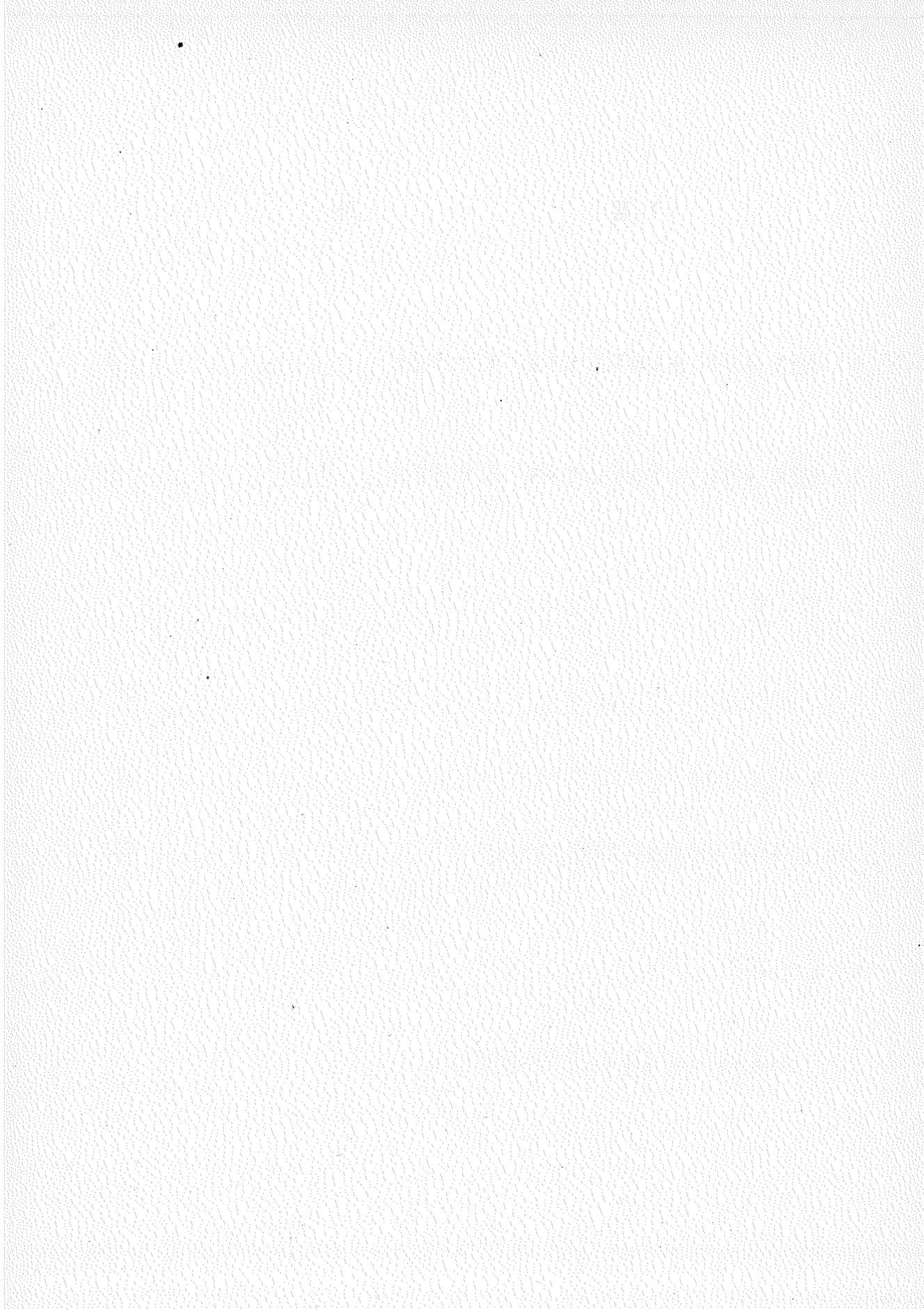
會 議 錄

('93. 4. 12 ~ 4. 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37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신분증규칙증개정규칙안.....	39
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5
4. 별 책 부 록	
o 『21세기를 향한 충청북도교육발전계획』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4월 12일 (월요일)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7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14시 09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4월 2일 충청북도 교
육감의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일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3-5호로
공고가 되어 오늘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난 21회 의결안건 처리사항입니
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증개정
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과 '93년도 교
특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

인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93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을 '93년 3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
조례증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교특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이 3월 30일 도의회에 제출
되어,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4월 2일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
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시겠다는 내
용이 4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의로 충청북도
교육위원신분증규칙증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휴회 회기중에 단
양 두항국민학교를 위시한 폐교학교
관리현황을 살펴보시겠고, 금일은 청
주기계공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4시 11분)

2.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교육위원 발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4월 13일은 폐교학교 현장방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려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은 휴회하기로 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의사봉 3타)

아시다시피 본 건은 이근수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나, 내용이 간단하므로 편의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국장 이근수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93년 4월 3일 이근수 교육위원의 3인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규격을 공무원증규격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 신분증규

격을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무원증규격과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규정은 공무원증규칙 제3조 제1항으로 개정 신분증의 서식은 의안 3쪽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도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은 학림국민학교 교사와 사유지상의 가옥이 인접하여 통행이 불편하므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폐지학교인 옥천 안내국민학교의 대동분교와 진천 문백국민학교의 은탄분교를 사용허가하고자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

도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근수, 권혁풍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근수, 권혁풍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잠시후에 교육위원실에서 교육위원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주기계공고 방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13일, 내일은 단양 두함에 있는 폐교학교 시설을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증개정규칙안 : 별첨 2.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3.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4월 14일 (수요일)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증개정규칙안 의결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
3. 기타 안건처리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증개정규칙안 의결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
3. 기타안건
 - 『21세기를 향한 충청북도교육발전계획』 보고의 건
 -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전회기 미답변분)

(11시 11분)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과장 사회대로 나옴)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증규칙개정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20여 분간에 걸쳐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회기에 실시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중 일부 답변을 듣지 못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사국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규칙개정안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듣고서, 일괄질의 하고서 답변은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유상·무상 사용허가건이 2개 올라왔는데, 그 허가대상이 누구며, 그 신청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목적은, 사용목적이 뭐며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 조건은 뭔가 전혀 알길이 없

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권혁풍위원의 질의.....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 부의장 김광수

보은교육청의 소관 사항인데 사유토지하고 그 학교토지하고 같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것을 학교내에 사유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옥천교육청 대동분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동분교 폐교하고 진천교육청 소관의 은탄분교 그 폐교 문제를 더 좀 자세하게 그 계획이 여기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임대를 해준다면 얼마 정도로 임대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에, 그러면 권혁풍위원 질의사항, 김광수위원 질의 사항을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에,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권혁풍위원님과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곁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학교 유상허가 대상은 누구이며, 사용 목적은 어떻게 돼있고, 기간 조건은 어떠한 하는 말씀이 있었고,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그 계획을 자세히 해달라, 그 임대료는 얼마이나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유상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동분교하고 은탄분교는 현재, 먼저 옥천 안내국민학교 대동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한의사 협회 동호회에서 학문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임대를 하고자 옥천교육

청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문백국민학교 은탄분교는 충북 학원연합회에서도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아마 진천교육청하고 얘기중에 있고 청주 MBC에서도 자기들 사원들 교육용으로 연수기관으로 하면 어떠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옥천교육청이나 진천교육청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었습디다마는 임대를 해준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교육위원회 의결이 나면은 의결후에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임대대상은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얼마나 하는 것은 의결을 받고서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당시에 재산평가를 해서 재산평가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은교육청 학교 부지내 토지는 운동장 부지내에 개인용 사가가 개인용

토지가 89평방미터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문 진입로하고의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하고 교환해서 운동장도 실질적으로 평수를 넓히고 활용에 상호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고자 이렇게 의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죠.

● 권혁풍 위원

제가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유 재산이라 그런지 이 유상사용허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하나 묻고요, 또 무상사용허가가 있는데, 어째 이게 웬만하면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될 수 있으면 유상으로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 두가지를 묻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유상사용허가 관계는 그 민법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무상으로 해주면 좀 어떠냐 하신 말씀이셨는데, 무상으로 해줄 때는 또 조건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해줘야 되고, 또 저희들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유상으로 해 주는 것이 저희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 질의 · 답변듣겠습니다.

예, 가만있어보세요.

● 박병해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교육청의 유상사용허가라고 하는 문제는 옥천교육장하고 사전에 허가가 된 것을 여기 지금 나온 겁니까 여기를 거쳐서 이제 사용허가가 제

대로 나는 겁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예, 옥천교육장하고 사전에 한의사 협회 동호회에서 빌리겠다 이렇게 교섭이 들어오니까, 옥천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의결이 되면은 의결에 따라서 그 후에 임대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 부의장 김광수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텐데, 이런 것을 절차로 봐서 어느게 정당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 단양의 판계라든가 이런 판계가 잘 못하면 복잡하게 얽혀매지는 이런 사항이 되기도 쉬울것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사용허가가 난 다음에 추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게.

● 관리국장 김근학

추가시설 문제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원래 허가 조건에 보며는 폐지 학교의 사용허가는 본래의 그 구조를 변경은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변경한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약상의 사용허가 계약할 때 그러한 것을 밟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조물은 원래대로 살려 놓으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기부채납이 전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자기들이 철거를 해준다든지 복구를 시켜주는 그러한 조건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병해위원

단양같은 경우를 지금 현실로 지금 겪어가면서 이것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추가시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냐, 나중에 복잡한 일이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괜찮

은 건지 모르겠어요.

● 관리국장 김학근

단양판계는 기부채납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단양교육장께서 판단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재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것이 재산가액이 얼마 안되며는 그래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원래 몇 억씩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조금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병해 위원

추가시설 문제도 지금 사전에 여기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시설 할 때일수록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양같이 저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어제 가보면 그 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상 그러한 어떤 목적하에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문제고, 그건 뭐 당연히 그 시설이 있어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설하게 나두고서 나중에 허가해준다

고하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줌.

● 관리국장 김근학

그 단양판계는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것이 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옛날에 시·군 교육청 단위로 자치단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부교육장 책임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 후에 91년 3월 26일날 광역 자치단체의원이 선출되면서 이것이 시·군단위의 교육자치는 폐지가 되고 도단위로만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때 교육부나 교육부의 지침은 법인격은 사실상 없어지지만 종전에 교육장이 담당하던 것은 가능하면 교육장한테 전부 해주는 걸로 해라 해서, 저희들도 거기 임대문제는 법인격이 있을 때 교육장이 하던대로 해주었고 또 교육장들도 그런 판단하에 임대절차를 밟아주니까, 허가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면서 아마 먼저 단양교육장께서 판단을 한 것은 기부채납이 전제로 되고, 또 그곳이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재산가액이 많기 때문에 과연 기부채납 문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같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나중에 보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단 임대하신 분도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해서 단양 교육장하고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관리국장님, 기부채납, 기부채납하시는데 그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건축허가를 교육장명의로 건축허가를 만들어놓고 그 기부채납이라는 말 용어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볼 적에 지금

뭐 그걸 가지고서 공방을 할 수도 없고, 의사진행 입장으로 봤을 적에 보은의 소관 문제는 이대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옥천하고 진천군은 지금 현재 두향분교의 그 폐교문제가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봤을 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해위원님께서도 "그것이 앞으로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들 어제 전 교육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이것을 무엇인가 분명하게 하고서 임대를 해주어야지 이런 상태로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목적에 맞게끔 그 시설이라든가 구조를 더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해서 뭐를 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옥천 분교하고 진천문제는 오늘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아니 가만 있어요, 지금은 질의이니까, 보충질의를 우선 하신거죠?

예, 더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예, 김응복위원 질의하세요.

● 김응복위원

예, 대개 폐지되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 지방에 조금 모순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명당자리요, 대개 다 어디가 학교위치가 됐든간에 학교 위치는 여러가지면에서 그 지방이나 교육 그 성격면으로 봐서 지방 유지들이나 모두가 다 협력해서 가장 좋은 자리, 또 가장 좋은 여건하에서 만들려고 애쓴 흔적의 자립니다.

이것이 이제 대여됐을 때에 법적으로 관리국장 말씀에 개인 또 단체라고 하는데 뭐 상위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뭣하지만 가령, 학원의 학원 연합회에 대여했을 때에 지금 고시학원이라는 게 각 지방마다 있어요.

고시학원이라는게 보며는 사실은 고가의 숙식비를 받고 기타 여타를 받고 숙식을 해가면서 과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학원연합회 같은 것에 대여 됐을 때에 그러지 않아도 학원 문제 여러가지면에서 과외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됐을 때에 영리적인 면에서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좀 떨어지고 한가한 곳에서 어떤 숙식을 해가면서, 가령 학원 과외를 할 소지는 없는 건가, 이런 염려도 돼요.

학원 연합회에서 굳이 이걸 이용한다는 뭐에 이용할 전망의 소지가 많겠느냐, 한번 생각했을 때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염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금 교육계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하는 면에서도 그 취지와 배치됩니다.

이런 면을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당시의 그러한 염려되는 면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허가조건에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절실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부가 부대 시설을 하면 의당 계약상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서 이런

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한 사항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아마 그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기 때문에 터치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령 그 원형은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한 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그러면 경향이 어떻겠느냐, 국가적으로 봐서 폐교된 학교를 영구히 방지 하겠느냐, 아무래도 이것이 재산가치도 있고, 여러가지면에서 국가 재산을 활용하고 그재원을 가용한다는 뜻에서라도 반드시 앞으로는 경향이 처분을 한다거나 불하를 한다거나 달리 사용하도록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기가 많지, 그대로 현상태대로 놔두고서 어떻게라도 관리하고 그게 나중에 몇 십년후에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관리하라고, 이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전망이.

그렇게 봤을 때에 하여간 우리집행부로서는 어떻게하면 재산가치를 가

장 효과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문제로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재산이라서 욕심은 생깁니다마는, 현실로 봐서 그 상태로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그거 붙들고 어떡할거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제 몇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값어치 있고 했을 때는 뭔가 크게 하여간 재산가치로서 활용할 값어치로 뭔가 방법은 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앞을 보면서 재산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면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이게 위임되고 종전의 그런 관례로 해서도 그렇고 이런데, 제가 교육계에 한 40여년 있어 봤습니다마는 상인들한테 손아귀에 놀아나요, 사실은.

일반인들 그 재정적인 머리 쓰고 이런데에 따라가질 못해요.

이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한데 나중에 말씀드린 경향과 이런것에 혹시나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니까, 여하튼간에 허가할때의 조건 같은 것은 조금 까다롭고 신중하게 하고, 일선 교육장님한테 일임만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관여도 해주십사하는 것이 어제 단양을 다녀온 저희들 모든 사람의 종합된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허가조건에 있어서 여러가지, 가령 그러한 기초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마련이 미비가 돼있다면은 굳이 성급히 이걸 이번에 통과하려 하지말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답변하시죠.

● 관리국장 김근학

예, 김응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국민학교는, 폐지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옛날에 설립된 학교는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2세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 유지들이 부지도 협찬

을 하고 심지어 노역까지 협찬을 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2세 교육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온 사항인데, 그 후에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농촌의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옛날의 학교들이 자꾸 폐지가 되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폐지학교는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원칙적으로 매각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보존을 하면서 나중에 또 농촌이 부흥이 될 때에는 다시 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각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현재 관리 상태 그대로 둔다고 하면 관리상에 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를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학교의 관리상 문제는 그

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된 학교를 그냥 거기에 기능직을 배치할 했을 경우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공공요금 문제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를 해주려 하고 있는데, 임대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에 유용하거나 또 교육목적하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항국민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명쾌하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할 때는 기본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토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백국민학교 은탄분교는 충북학원연합회하고 청주 MBC에서 임대를 아마 진천교육장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학원연합회에서 은탄분교를 임

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수강생을 위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장, 즉 시설강습소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에서도 사원들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진천교육장하고 좀 얘기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진천교육청에서나 옥천교육청에서 그 폐지된 학교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관리에도 부담을 좀 덜고, 조그만한 세입이나마 좀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재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이상일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집행청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 올때 단순하게 그 교육청, 그리고 학교 유상·무상 사용 뭐 이렇게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활용여부를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그만이었지만, 물론 집행청, 또 지역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 올때 그 폐교되는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계획서라도 좀 붙여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읽어보면 아 이걸 뭐로 활용하겠구나, 이것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유상사용허가, 무상사용허가 이러니까 이걸 뭐에 쓸건지 궁금하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 계획서를 올릴 때는 다만 활용계획서라도 좀 붙여가지고 이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쓸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의결을 해주는 데도 도

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 올 때는 참고자료로 해서라도 좋고, 뒤에 유인물 하나라도 붙여서라도 활용계획서를 좀 붙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죠,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지금 여러가지 질의중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단양 두항분교 그 폐교의 현황을 답사하고 와서는 이 두학교, 안내 대

동분교하고 진천 은탄분교 문제는 지금 이상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서 허가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의 집약이라고 이렇게 봐져서 이것은 좀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반대토론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외에 찬성토론 하실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찬성하시는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찬성토론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두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12시 04분)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위원 외에 3인 위원께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님 외의 3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광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사회대로 나옴)

● 부의장 김광수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대동분교와 진천 은탄분교 등 2개 폐지 학교를 유상사용하고자 하는 주체인 학원연합회나 한의사동호회가 객관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확실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들이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업

목적이 있겠지마는 실제 운영함에 따라서 이런 설정, 영리추구, 위탁시설화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폐지학교들이 향후 재산가치가 점증될 것이 전망되며 당해 학교를 거쳐나간 졸업생들의 구심점 역할로도 그 존재가치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모든 폐지학교의 적극적인 보호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옥천 대동분교와 진천 은탄분교 두 폐지학교에 대한 유상사용허가 계획은 유보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 외에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가 질의하고 했으니, 질의·토론 없으시겠조?

그러면 수정질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 거수)

예,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으시기 때문에 표결결과 이 수정동의안이 전원 찬동으로 김광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제안·발의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3. 기타안건

○ 『21세기를 향한 충청북도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

○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전화기 미답변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기타 안건처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 보고의 진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충청북도교육발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초록을 제목에 의해 배부드린 후 이제 원고를 정비하였으므로 인쇄이전에 계획수립의 체계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차례는 먼저 전체적인 구성체계를 말씀드리고 각 장의 주요내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각 과별로 추진사업과 예산통계를 이용하여 집필위원들이 서술한 관계로 일부 중복사항은 최종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교육발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우리가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의견발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권혁풍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좀 의문나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 제3조에 보며는 제1항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볼 때 "장기발전 교육계획은 그야말로 중요사항중의 중요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장기발전계획을 일단세우셔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집행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어떤

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할 계획이신가 하는 것 하나 또 궁금합니다.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완전 수립한 뒤에 매년 세우는 주요업무계획과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건가 두가지, 세번째는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3항 2절에 "지역화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폭넓게 개발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학교 이런 것과는 어떠한 성격의 관계가 되며, 그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분.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응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으로의 지향점, 또 한가지 발전적인 원대성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계획이야

말로 가장 전문성을 요하고, 또 전망
말하자면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으
로 이게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이러한 방대한, 또
장래를 내다보는 한국교육의 지침이
라 말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많은 인력이 소모됐으리라고
봅니다.

제일 그런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안을 작성하는데 관계한 관계관과
여기에 집필위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여했으며, 어떠한 질
차와 여기에 기한이 소요됐는가를 조
금 알고자 합니다.

여기 입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관
계관이라든가 집행위원 주 멤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말씀.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이제 몇 년있으면 21세기가 됩니다

대개 21세기를 국제화, 정보화, 민주
화 이 세가지 물결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에서도 이런 '21세기
를 향한 교육발전계획'을 미리 준비
를 해서 우리 아동들이 정말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계
획을 세워 주신것 대단히 고맙게 생
각은 합니다.

이 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저도 읽
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
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돼 가느냐,
또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 이것을 언
제쯤 바로 바꾸어서 새로운 목표수정
을 하겠는가 하는 검증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한가지만 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박병해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김응복위원님이 말씀한거라, 뭐 같
은 애긴데 여기 맨 나중 페이지를 보
며는 여기 참여한 위원님들 성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이 계획으로 그칠 것이냐, 보다 전문가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서 뭔가 확정질 만한 어떤 교정이나 뭐 이런것도 한번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 의장 김영세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법에 있어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도 수록되는 제목을 갖다가 나눠드렸고, 또 이 책자도 이번 회기 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 계획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의 개정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화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역사회 학교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응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다가 발전계획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8월 13일 부교육감실에서 각 국·과장해서 19분이 모여 가지고 일차적으로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기획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내 각과 계장급들이 상이 모여서 이 과제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과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각과 기획위원들이 또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위원들을 말씀드리며는 전체가 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이 다섯분, 중등이 셋, 일반적이 하나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전문적이 다섯분, 교감이 둘, 주임이 하나, 일반적이 하나, 대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석사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정보화, 민주화 이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21세기에 총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업무 계획과 같이 그해에 모든 것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내용에 있어서 연차적인 시행착오라든가, 또는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현재 집행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의견 수렴으로써 계획을 작성하는데 끝을 맺을 것이나, 그러면 전문위원들에게 다시 감수를 할 것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갖다가 위주로 했기때문에 내용면에서 크게

현장 교육을 전문으로 하신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인의 의견이 더 이상은 필요치 않을까, 또 수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며는 그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권혁풍위원

답변을 듣다보니까 좀 애매하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뭐 제가 질문답변이 아니라니까 그냥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분명히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주고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13조에 다시 세분화시켜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항 1호부터 9호까지 즉 나오는데, 여기에 1항서부터 8호까지는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이런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호를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13조 1항 9호에 보면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그것이 규정이 안되었지만, 9호의 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에다가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회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 문제에 대해선 아마 지난 회기때 제가 답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 규정을 한다며는 뭐 집행청으로서는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기

관과 집행기관의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서로간에 균형적인 관계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혁풍위원

뭐 균형이, 어떤 우리가 무슨 집행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형식상이라도 집행부에서 만든 장기발전 계획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형식상이라도 심의·의결권을 거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또.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이 장기발전 계획을 성안하느라고 참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들어 온 지가 사흘밖에 안됐어요.

이 방대한 양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신중히 검토

토하셔서 혹시나 앞으로 의견을 제시할 사항 있으려는 다음 회기에 정식 질의로 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전 회기에 실시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중 일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계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 권혁풍위원

예, 제가 질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위원

그것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번 회기에 제가 지역교육장 인사를 둘러싼 공개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유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고, 인사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답변을 피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하시겠다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양해를 해서 간담회에서 듣기로 이렇게 제가 동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기초 교육자치가 현재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일반 행정은 기초자치가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만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 교육자치가 되어가지고 군단위에서도 역시 교육위원들이 역시 선출이 되고 했다며는 그 교육위원들이 그 지역 교육장을 선출할 겁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겠는데, 그렇게 될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그 지역 출신이 아

닌 인사 그 지역에 교육장으로 선출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하는 것을 우
리가 상상해 볼때 어디까지나 교육자
치의 정신을 살려서 지역여론을 대변
하는 교육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타 여러가지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인사 그 지역인사를, 될 수 있으
면 그 지역인사를 교육장으로 임명하
는것이 그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합당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미흡한 인사라 하더라도 인재를 키운
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
으로, 즉 그 지역인사를 그 지역에 교
육장으로 뽑아 달라는 그러한 교육위
원으로서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사의 인사를 할 때 어떤
개방적인 인사의 개방, 재정의 개방
이런 것을 주요업무지침에도 내세웠
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도 어디까지나
물론 평교사의 인사를 개방한다는 것
은 뭐 점수에 의해서하는 거니까 우
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
는 교육장인사는 물론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자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좀
부족한 인사라 하더라도 좀 어폐가 있
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지역 인사를
될 수 있으면 뽑아 주셔서 교육자치
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물론 교육감
한테 고유권한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했
느냐 이렇게 안될 것을 이렇게 했느
냐, 위법사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
니다.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허나 그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평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다, 이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한 여론과 그런 평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충분히 좀 고려해줬으면 감사
하겠고 그 답변은 간담회에서 듣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의 질문의 건을 질

문하신 제안자인 권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간담회에서 답변하기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입니다.

지난 회기때 보충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0일 5일간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간에 보충지도 지침이 변경된 전개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지도가 '87년 3월 9일 지침에 의하면 "운영비는 소요지도비 25%이내, 또 관리 수당 및 간접참여자 수당 운영비 범위내에서 지급"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5월 12일 "학교장 책

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학생의 희망, 학부모, 교사, 주기별 중등교장협의회 협의과정을 거쳐 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7월10일자로 "학기방학부터 중학교 보충수업을 일체 폐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교육장이 학교장들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된 내용인 사항을 수정하는 '93년 3월26일 "능력별 반편성이 권장되고 비수업자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여기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질의 해야겠어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정기 감사시에 그 비수업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보충수업이라는 그 정의상에 보충수업 원래 성격상에

비수업자까지 수당을 준다며는 학교에는 공식적인 공납금이 수업료가 들어가고 육성회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때문에 보충수업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수익자 부담원칙이란다 할 것 같으면 그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 최저의 경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이것이 교육적으로 맞을텐데 25%잡비를 운영비로 부과할 수 있단니까, 25%를 부과해 가지고 비수업자에게까지 수당을 주었을때 결과적으로 수익자인 학생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그 답변한 내용에 의한다며는 "전부 학교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교육장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이런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일선의 교육이 정말로 본체도에 오르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에는 감독청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기 때문에 감독청으로서의 그 감독청의 권한이 있고 없고간에, 교육이 잘못됐을 때는 감독권을 발휘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취지에서 시정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을 해야겠다" "어떻게 시정을 했다"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적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비 지도수당, 관리수당 책정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금액의 불균형이 있었고 간접참여자 수당지급 대상자별 범위가 미확정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별 중등교장 협의회시 협의가 곤란하다는 것, 이것은 학교규모나 인문·실업 또는 군·면 지구등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
고요, 무리한 보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어서 보충수업을 제
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는 차후에 지침을 받아서 시정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참고적으로 알려두면요, 지금 우리
나라 공교육비는 10조가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사교육비가 지금 12조가 넘
는다는 이런 예상이에요.

또 실지로 보충수업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지금 학교에 육성회비라는
교육활동의 보조 경비가 있는데, 정
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육성회비보
다도 보충수업비 액수가 더 크다고
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보충수업비가 2조가 넘는다고 내가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
도만 하더라도 " 각 학교의 육성회
본 예산보다 보충수업의 예산이 더
크다"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개
학교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
실.

● 의장 김영세

그러니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럼 공식화 시켜서 정식 교납금으
로 받아야지, 이런 파행 보충수업을
하기 위한 비정규적인 수업행위가 그
금액이 정규적인 교납금보다 많다면
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우
리가 교육의 본질성을 추구한다는게
 됩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파행적인 수
업행위는 사라질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혁의 차원에서
과감히 시정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
입니다.

그럼 또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
시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전회기에 실
시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타 별도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위원님.

● 권혁풍 위원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유상
허가, 무상허가, 취득변경공유재산관
리계획의 의안 상정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목적이
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내용 뭐 어떤 거든지 확실하게 집행
부에서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
로 검토도 안하시고 그냥 여기다 내
시는 건지,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제
두향국민학교에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똑

떨어지게 이렇게 좀 하셔서 앞으로
제안을 했으면, 의안을 냈으면 고맙
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아까도 무상사용허가 관계
가 나왔는데, 물론 국가와 공공단체
우리 다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서
로가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
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열악한 우리 교육재정을 한푼이라도
보태쓰기 위해서는, 바꿔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이
런 요청을 할 때 과연 들어 줄 수 있
느냐, 따져서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
을 생각 할 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는 무상을 피하고 어떤 교환이라든가
뭔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러
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권혁풍위원 발언하신 것
은 의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반 타 정부기관에
다가 학교용지나 뭐 요구했을 때 무
상으로 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p>그런데 타 기관에서는 교육용 재산 전부 무상으로 대여하라 뭐하러 이러는게 오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유상으로 하는게 앞으로 우리를 돕는 길이 아닌가, 집행청에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p>	<p>예, 그럼 이것으로 제2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이상으로 제2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2시 47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위원수 : 11명 <p style="margin-left: 40px;">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 출석공무원 : 17명 <p style="margin-left: 40px;">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p>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 2.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3.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22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臨 時 會)

1993. 4. 12. - 4. 14. (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4. 12(월)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2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 기관방문(청주기계공고)	회 기 4.12 - 4.14. (3일간)
4. 13(화)	【 본회의 휴회 】 ※ 폐교학교(단양 두향) 방문	
4. 14(수)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결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 3. 기타안건 처리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2-1
----------	------

발의년월일 1993년 4월 3일

발 의 자 이근수 교육위원(인)
의 3인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신분증 규격을 공무원증 규격을 준용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육위원 신분증 서식 규격등을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안 별표)

3. 참고규정

- 공무원증규칙 제3조 제1항
공무원증에는 공무원증 번호, 소속기관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별도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 면

교육위원신분증
사 진
(발급번호)
(성 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후 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임.
1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교육위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등은 공무원증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전 별표)

전 면

제 호	사 진
교육위원신분증	
성 명	_____
주민등록 번호	_____
상기자는 충청북도교육위원임을 증명함.	
199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Vertical dimensions on the right: 3.0, 5.5, 2.0, 0.5

Horizontal dimensions at the bottom: 1.5, 4.1, 2.5, 8.1

후 면

주의 사항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사진규격등

- ① 사진(3.0cm×2.5cm)
- ② 성명(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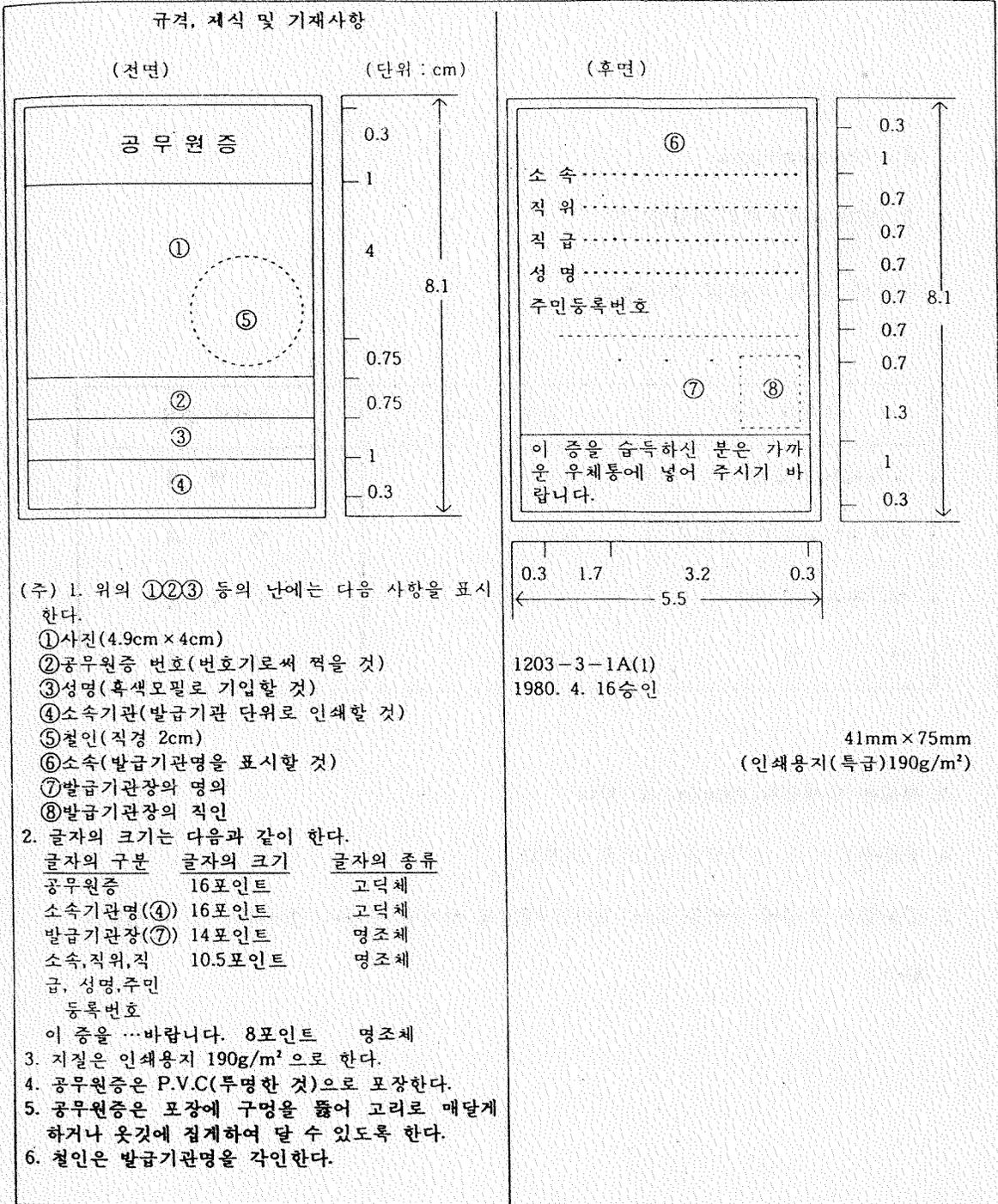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교육위원 신분증	16포인트	고 덕 체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장	14포인트	고 덕 체
상기자는 _증명함	10.5포인트	고 덕 체
기 타	8포인트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 V. 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증규칙 별표1)



(별첨 3)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4.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

의 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1993.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 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지역교육청

나. 변경 내역

1) 취득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69,448	14,627,762	69,772	14,629,065	324	1,303
건 물	42,608.92	15,283,406	42,608.92	15,283,406	0	0
계		29,911,168		29,912,471		1,303

2) 처분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127,868.9	3,727,667	128,192.9	3,728,898	324	1,231
건 물	23,386.57	2,084,334	23,386.57	2,084,334	0	0
공작물	23 식	24,787	23 식	24,787	0	0
계		5,836,788		5,838,019		1,231

3) 유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년 경		중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646,772.16	91,021	665,321.16	95,365	18,549	4,344
건 물	22,806.18	98,805	23,958.23	103,883	1,152,05	5,078
계		189,826		199,248		9,422

4) 무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년 경		중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89,475		89,475		0	
건 물	7,070.6		7,070.6		0	

3. 제안 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 '93.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공유재산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별 소재지	명	소재지	면적	당		전		면적	시	유
					합	액	합	액			
취득	토지	학림대	고	회			324	1,303	324	1,303	시유토지의 카옥이 고 사외 인집하여 통행불 편 및 운동장 확장
처분	토지	학림대	대	회			324	1,231	324	1,231	

유치교육청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별 소재지	명	소재지	면적	당		전		면적	시	유
					합	액	합	액			
사용	토지	육천교육청	유상시용허가			15,454	3,694	15,454	3,694	폐지학교(대동본교)	
허가	건물	육천교육청	유상시용허가			864.33	2,913	864.33	2,913	폐지학교(대동본교)	

19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단위 : m²/천원)

진천교육청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명		번		경		감		사	유
				물	량	물	량	금	액	금	액		
사용	토지	진천교육청	유상사용허가			3,095	3,095	650	650	3,095	650	폐지학교(은탄분교)	
허가	건물	진천교육청	유상사용허가			287.72	287.72	2,165	2,165	287.72	2,165	폐지학교(은탄분교)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